

학교법인 이리학원 정관

| | | | |
|-------|-----|-----|--------|
| 1981년 | 8월 | 10일 | 제정 |
| 1983년 | 3월 | 5일 | 1차 개정 |
| 1983년 | 10월 | 14일 | 2차 개정 |
| 2000년 | 8월 | 12일 | 17차 개정 |
| 2001년 | 7월 | 11일 | 18차 개정 |
| 2002년 | 1월 | 1일 | 19차 개정 |
| 2007년 | 1월 | 25일 | 20차 개정 |
| 2008년 | 2월 | 일 | 21차 개정 |
| 2012년 | 5월 | 14일 | 22차 개정 |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중·고등·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 칭) 이 법인은 학교법인 이리 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 3 조 (설치 학교)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.

1. 이리중학교
2. 전북제일고등학교

제 4 조 (주 소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익산시 평화동 169번지에 둔다.

제 5 조 (정관의 변경)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변경된 사항은 14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자 산 과 회 계

제 1 절 자 산

- 제 6 조 (자산의 구분) ①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 금 및 기타 이 사회의 의결 위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.
③ 보통 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제 7 조 (재산의 관리)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, 증여,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- 제 8 조 (경비와 유지 방법)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 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2 절 회 계

- 제 9 조 (회계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.
② 법인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.
③ 제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의 심의 · 의결을 거친 다음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,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편성하여 집행한다.
④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

문을 거쳐야 한다.

제 9조의 2(회계의 보고 및 공시)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,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제 1항에 의한 법인 및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(부속명세서 포함)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서(부속명세서, 감사보고서 포함)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안에 각각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예산외의 채무 부담) 수지 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11 조 (세계 잉여금의 처리)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 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
제 12 조 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 일까지로 한다.

제 3 절 (삭제 2007. 1.)

제 13 조 (삭제 2007. 1.)

제 14 조 (삭제 2007. 1.)

제 15 조 (삭제 2007. 1.)

제 16 조 (삭제 2007. 1.)

제 17 조 (삭제 2007. 1.)

제 3 장 기 관

제 1 절 임 원

제 18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 12인 (이사장 1인 포함)

2. 감사 2인

제 19 조 (임원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.

1. 이사 5년

2. 감사 3년,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제 20 조 (임원의 선임 방법)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이 경우 임원의 성명, 나이, 임기,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
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20 조의 2 (개방이사의 정수)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한다

제 20 조의 3 (개방이사의 선임) ①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(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)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 정한 자격 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.

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 동 기간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의 추천을 요청한다.

④ 그 밖에 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 추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

제 20 조의 4 (추천위원회) ① 추천위원회는 전북제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

둔다.

-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명으로 하고,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: 2인
 - 2.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자 : 3인
- ③ 기타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21 조 (임원 선임의 제한) ① 이사 정수의 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.

-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.
-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- ⑤ 감사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.
- ⑥ 제 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 2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2 조 (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)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
-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 23 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.
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24 조 (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)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 자로 지명된 이사는
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25 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- ①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- ②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③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
-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⑤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일

제 26 조 (임원의 겸직 금지)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.

- ② 감사는 이사장,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(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)을 겸할 수 없다.
- ③ 이사장은 당해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장을 겸할 수 없다

제 2 절 이 사 회

제 27 조 (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)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.
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 1. 학교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3.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5.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
6.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
 7.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
 8.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- 제 28 조 (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제 29 조 (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①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-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
- 제 30 조 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- 제 31 조(이사회 소집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이사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.
1.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2.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판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31 조의 2(이사회 회의록)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, 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.

1. 개의,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
2. 안건
3. 의사
4.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
5. 표결수
6. 그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,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 서명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(間)서명 또는 간(間)인하게 할 수 있다.

③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8조의 2 제1항 각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제 3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를 의결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수 익 사 업

제 32 조 (수익 사업의 종류) 이 법인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
1. 농 경 사 업
2. 조 립 사 업

제 33 조 (수익 사업의 명칭) 제 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리농장 및 송림

또는 잡목의 별채 목탄의 제조를 경영한다.

제 34 조 (수익 사업체의 주소) 이리농장 및 조림 사업의 사무(업)소는 익산시 평화동 169번지에 둔다.

제 35 조 (관리인)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, 복무,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.

제 5 장 해 산

제 36 조 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7 조 (잔여 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.

제 38 조 (청산인)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전라북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6 장 교 직 원

제 1 절 교 원

제 1 관 임명

제 39 조 (임면) ① 이 법인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할 수 있다.

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

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,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

1. 배우자

2.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

-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 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9 조의 2 (기간제 교원)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 피할 때에는 그 기간중 당해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.

③ 사립학교법 제5조 1항에 의거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은 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.

④ 학교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제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 39 조의 3 (전형결과의 공개)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 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내지 제 17조를 준용한다.

제 2 관 신 분 보 장

제 40 조 (휴직의 사유)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임면권자는 휴직

을 명하여야 한다.

-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.
- ②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.
- ③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.
- ④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
- ⑤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.
- ⑥ 국제기구 외국 기관 또는 해외 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.
- ⑦ 자녀(만 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)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.
- ⑧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.
- ⑨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.
- ⑩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 5호에 해당하게 된 때.

제 41 조 (휴직기간)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.
- ②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.
- ③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.
- ④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.
- ⑥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 여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.

- ⑦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- ⑧ 제 40조 제 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⑨ 제 40조 제 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, 해외유학, 연수 또는 연구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⑩ 제 6호 또는 제 9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.

제 42 조 (휴직 교원의 신분)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- ② 휴직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-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

제 43 조 (휴직 교원의 처우) ①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.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,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 한다.

- ②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.
- ③ 제 1호내지 제 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44 조 (직위 해제 및 해임)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.

-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1.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

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.

2.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
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용자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.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.
- ⑤ 임면권자는 제 2항 제 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.
- ⑥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⑦ 제 2항 제 1호와 제 2호 또는 제 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 2항 제 2호 또는 제 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.
- ⑧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.

제 45 조 (보수)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보수 규정과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6 조 (의사에 반한 휴직, 면직 등의 금지)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 학급,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
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 46 조의 2 (명예퇴직 수당)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.

② 제 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, 범위, 지급액,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.

③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는 특별 승진을 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교육공무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6 조의 3 (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)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.

제 46 조의 4 (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) ① 임면권자는 정년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한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.

② 제 1항에 의하여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제 3 관 교원 인사 위원회

제 47 조 (교원 인사위원회 설치) 교원(학교의장을 제외한다)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48 조 (인사위원회 회의 기능) 인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2.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
3. 교원의 연수 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4.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

5.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 49 조 (인사위원회의 조직) ① 인사 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하되, 위원은 교원외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원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.
- ② 인사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 50 조 (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)

- ① 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.
- ② 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- ③ 인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 51 조 (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) ① 인사 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 한다.

- ② 인사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 52 조 (회의록 작성) ① 인사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학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- 제 53 조 (인사 위원회의 간사 등) ① 인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-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.

- 제 54 조 (운영 세칙)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제 2 절 교원 징계위원회

제 55 조 (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)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 한다.

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56 조 (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) 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③ 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7 조 (징계 의결 기한)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 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58 조 (제척 사유) 교원 징계 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여 하지 못한다.

제 58 조의 2 (위원의 기피 등) ① 징계 대상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 징계 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 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 위원 수의 3분의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

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 58 조의 3 (징계 의결요구 사유 통지)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.

제 59 조 (진상 조사 및 의견의 개진)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.

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 60 조 (징계 의결) ① 징계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.

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
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④ 징계 처분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⑤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 61 조 (징계 의결 시의 정상 참작 등)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, 공적, 개전의정,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
제 61 조의 2 (징계 사유의 시효)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

제 62 조 (교원 징계위원회의 간사 등)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들 수 있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중에서 그

임명권자가 임명한다.

제 63 조 (운영 세칙) 교원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3 절 삭제

제 64 조내지 제 77 조 삭제

제 4 절 사무직원

제 78 조 (자격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직원(기능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“일반 직원”이라 한다)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.
 7. 이 법인과 이 법인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- ② 일반 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 기술적 및 기능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,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 할 수 있다.

③ 재직 중인 일반 직원이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- 제 79 조 (임용) ① 일반 직원의 신규임용, 승진, 승급, 근속승진, 전직, 전보, 강임, 휴직, 직위 해제, 복직, 면직, 해임 및 파면(이하 “임용”이라 한다)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,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,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.

제 80 조 (복무)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.

제 80 조의 1 (행동강령) 교원 및 일반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.

제 81 조 (보수) 일반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82 조 (신분 보장) 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.

- 제 83 조 (징계 및 재심 청구)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 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.
- ② 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 직원의 재심 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와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83 조의 2 (정년) ① 교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.

1.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.
 2. 일반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
- ② 교원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에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자에, 9월에서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

28일자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.

- 제83조의3 (일반직명예퇴직) ① 사립학교 일반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.
- ② 제 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, 범위, 지급액,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는 특별 승진을 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7 장 직 제

제 1 절 법인

- 제 84 조 (법인사무조직)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서무과장 을 두며 과장은 부참사로 보한다.
-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2 절 고 등 학 교

- 제 85 조 (교장등)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.
-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.
-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.

- 제 86 조 (하부 조직)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사무관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3 절 중 학 교

- 제 87 조 (교장등)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.
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.
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.

제 88 조 (하부 조직)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4 절 정 원

제 89 조 (정원)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 2와 같다.

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

제 90 조 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초·중등교육법 제 31조 제 1항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·경영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 91 조 (운영위원회의 기능) ① 운영위원회는 초·중등교육법 제 32조 제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

1. 학교규정의 제·개정
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
3.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4. 학부모, 교직원, 학생,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
 5.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
 6.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② 초·중등교육법 제 32조 제 1항 제 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중 학생의 교육활동·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.
- ③ 제 1항 제 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

제 92 조 (위원의 선출 등)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.

② 교원위원 선출

1. 입후보자 등록 : 교원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단독 결정으로 입후보 등록을 한다.
2. 선출 :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 정수의 3배수를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원정수의 3배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추천하며, 입후보자가 없거나, 위원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.
3.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4. 위원의 선출 절차,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93 조 (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) ①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며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

제 94 조 (위원의 자격)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 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
제 95 조 (위원의 자격 상실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

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
2.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·퇴학한 때
3.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4.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
② 제 1항 제 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.

제 96 조 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 제 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- ③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,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제 97 조 (회의 및 회의소집 등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.

-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③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 98 조 (소위원회의 설치) ① 운영위원회는 안전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.

-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99 조 (건의사항 처리) ①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.

- ②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100 조 (의안의 제출·발의)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

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

제 101 조 (학교内外의 자생조직)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内外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들 수 되며,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

제 102 조 (위임규정) 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9 장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

제 104 조 (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)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.) 제 6조 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이리중학교·전북제일고등학교에 학교 교육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 105 조 (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) ① 학교교육분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는 영 제 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(이하 “각급학교”라 한다.)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(직원을 포함

한다. 이하같다.)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 · 조정 · 권고(이하 “심의 등”이라한다.)한다.

1.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.
2.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라 한다.)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
3.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 ·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

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 ·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공제회는 임 · 직원의 회의 참석, 고문 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 106 조 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· 학부모위원 ·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.

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.

제 107 조 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

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08조 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09 조 (분쟁조정 신청)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 110 조 (회의 개최 등) ① 회의는 분쟁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.

② 분쟁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,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.

③ 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,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111 조 (위원의 제척)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.

제 112 조 (심의 등 결과의 처리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, 보상 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 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·폭행·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 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분쟁 사안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 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

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 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 113 조 (간사)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제 114 조 (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)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, 위원의 자격상 실, 기타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장(절)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15 조 (운영세칙) 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10 장 보 칙

제 116조 (공고) 이 법인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(전북 신문)에 공고한다.

제 117 조 (시행 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제 118 조 (설립 당초의 임원)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| 직 명 | 성 명 | 임기 | 주 소 | 비 고 |
|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이사장 | 김원용 | 4년 | 이리부 화선동 11번지 | |
| 이 사 | 배 현 | 4년 | 이리부 주현동 17번지 | |
| " | 이하우 | 4년 | 군산부 금서동 101번지 | |
| " | 김갑임 | 4년 | 이리부 남중동 230번지 | |
| " | 김기병 | 4년 | 이리부 갈산동 202번지 | |
| " | 박육철 | 4년 | 이리부 주현동 168번지 | |
| " | 박한규 | 4년 | 이리부 호남동 58번지 | |
| 감 사 | 배상열 | 2년 | 이리부 창신동 148번지 | |
| " | 이원용 | 2년 | 이리부 갈산동 168번지 | |

- 부 칙 -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198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일반 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 되며 여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 되 일반 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.

- 부 칙 -

- ① (시행 일자) 이 정관은 198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 조치) 제 83조의 2 (정년)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이 개정되는 날 이미 정년이 해당되는 일반직 직원은 1984년 2월 28일 당연 퇴직한다.

- 부 칙 -

- ① (시행 일자) 이 정관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 조치)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.

- 부 칙 -

(시행 일자) 이 정관은 1987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(시행 일자) 이 정관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(시행 일자) 이 정관은 199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(시행 일자) 이 정관은 199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(시행 일자) 이 정관은 199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- ① (시행 일자) 이 정관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 조치) 이 정관은 시행 당시 학교의 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새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- 부 칙 -

(시행일) 이 정관은 199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(시행일) 이 정관은 199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(시행일) 이 정관은 199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(시행일) 이 정관은 199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(시행일) 이 정관은 199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00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 (행정 81422-10122)

- 부 칙 -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) 초 ·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제1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 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회의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,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.

③ (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.

- 부 칙 -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00년 8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01년 7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01년 7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02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단, 제 3조(설치학교) 2항에 관한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7년 1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임원선임기간의 예외) 개정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 이사 또는 감사는 감사는 제 20조 제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.

- 부 칙 -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8년 2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 조치)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그 임기 만료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.

- 부 칙 -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5조(정관의 변경)는 2012.07.27.일 이후부터 시행한다.

(별표1)

| 법인 일반 직원 | 정원 |
|----------|-----|
| 총 계 | 5명 |
| 일반직 계 | 3명 |
| 5급(사무관) | 1명 |
| 6급(주 사) | 1명 |
| 8급(서 기) | 1명 |
| 기능직 계 | 2명 |
| 9급(사무원) | 2명 |
| 학교 일반 직원 | 정원 |
| 총 계 | 11명 |
| 일반직 계 | 8명 |
| 5급(사무관) | 1명 |
| 6급(주 사) | 2명 |
| 8급(서 기) | 2명 |
| 기능직 계 | 6명 |
| 9급(사무원) | 6명 |